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임 시 조 치 신 청 기 각

(00-0000-0000)

제 0000-0000 호 0000. 00. 00.

수 신: ○○경찰서장(○○보호관찰소장) 발 신: ○○지방공소청장(지청장)

제 목: **임시조치 신청 기각** 검 사 (서명 또는 인)

다음 사람에 대한 ***(죄명)*** 피의사건에 관하여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의 신청이 있는바,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신청을 기각합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5">아동학대
행위자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3">(세)</td></tr>
<tr><td>직 업</td><td></td><td>피해아동등과
의 관계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거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보 조 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피해아동등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법정대리인 또는
담당 아동학대
전담공무원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임시조치의
내용</td><td>[]</td><td colspan="3">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(법 제19조제1항제1호)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3">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(법 제19조제1항제2호)
기준지: []주거 []학교·학원 []보호시설 []병원
[]그 밖의 장소()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3">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(법 제19조제1항제3호)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3">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(법 제19조제1항제4호)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3">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(법 제19조제1항제5호)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3">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(법 제19조제1항제6호)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3">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(법 제19조제1항제7호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범죄사실의 요지 및
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</td><td colspan="3">별첨 임시조치 신청서(법 제14조제1항),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또는 긴급임시조치결정서(법 제15조제1항) 기재내용과 같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/table>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